



#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http://www.namwon.go.kr)

제30호 2022. 4. 4(월)

선 람	기관의 장

## 규 칙

- 남원시 자치법규 공포목록-----1
- 남원시 규칙 제 671호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2

##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2-792호 보훈대상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3
- 남원시 공고 제2022-798호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16
- 남원시 공고 제2022-799호 남원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22
- 남원시 공고 제2022-800호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42

회 람										
--------	--	--	--	--	--	--	--	--	--	--

# 남원시 자치법규 공포 목록

- 총 1건 (규칙 1) -

□ 규칙 : 1건

공포 번호	규칙명	제·개 정 내 용	비고
671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폐지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4월 1일

남원시 규칙 제 671 호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원시 공고 제2022-792 호

『보훈대상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 남 원 시 장

『 보훈대상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보훈관계 법령 등에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감면대상에서 누락된 사항을 파악하여 일괄 정비하고, 보훈대상자 예우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요금 면제누락 사항을 정비하고, 각 조례 별표에 반영함.
- 가. (안 제1조)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별표
- 나. (안 제2조)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8조, 별표
- 다. (안 제3조)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제8조, 별표

### 3. 입법예고기간 : 2022. 4. 1. ~ 2022. 4. 21. (20일간)

####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2년 4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감사실

#####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wldus3787@korea.kr), fax(063-620-6781) 및 직접방문 등

####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063-620-60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보훈대상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보훈대상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04.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감 사 실 장

### 1. 개정이유

보훈관계 법령 등에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감면대상에서 누락된 사항을 파악하여 일괄 정비하고, 보훈대상자 예우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요금 면제누락 사항을 정비하고 각 조례 별표에 반영함.

가. (안 제1조)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별표

나. (안 제2조)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8조, 별표

다. (안 제3조)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제8조, 별표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의사상사자법」, 「국군포로송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4. 1. ~ 2022. 4. 21.(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보훈대상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립김병중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6호, 제7호, 제9호를 삭제한다. 종전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  
별표3에 따른 면제 대상자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2조(「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5호, 제6호, 제7호를 삭제한다. 종전  
제8호부터 제15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  
별표4에 따른 면제 대상자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3조(「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 별표4에 따른 면제 대상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신·구조문대비표

## 제1조(「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관람료의 면제) ① 시장은 제7조의 단서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다만, 신분증 또는 증명서 등을 매표소에 제시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u>국가유공자와 그 유족</u></p> <p>6. 「<u>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 적용을 받는 <u>독립유공자와 그 유족</u></p> <p>7. 「<u>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의 적용을 받는 <u>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u></p> <p>8.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의 적용을 받는 <u>참전유공자</u></p> <p>9. ~ 13. (생략)</p> <p>② (생략)</p>	<p>제8조(입장료 면제) ①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국가유공자 등 별표3에 따른 면제 대상자</u></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6. ~ 10. (현행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제2조(「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입장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p> <p>1. ~ 3. (생략)</p> <p>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p> <p>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p> <p>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p> <p>7.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p> <p>8. ~ 14. (생략)</p> <p>15. (생략)</p> <p>② (생략)</p>	<p>제8조(입장료 면제) ①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 별표4에 따른 면제 대상자</p> <p>&lt;삭제&gt;</p> <p>&lt;삭제&gt;</p> <p>&lt;삭제&gt;</p> <p>5. ~ 11. (현행 제8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p> <p>12. (현행 제15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제3조(「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입장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p> <p>1. ~ 3. (생략)</p> <p>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u>사람</u></p> <p>5. ~ 11. (생략)</p>	<p>제8조(입장료 감면) ①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의 적용을 받는 <u>국가유공자 등 별표4에 따른 면제 대상자</u></p> <p>5. ~ 11. (현행과 같음)</p>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별표 3] <신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람료 면제대상자**(제8조제1항제5호 관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 나.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의사상자. 다만, 의사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 다.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등록포로
  -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별표 4] <신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입장료 면제대상자**(제8조제1항제4호 관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 나.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의사상자. 다만, 의사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 다.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등록포로
  -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별표 4] <신설>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면제대상자**(제8조제1항제4호 관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 나.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의사상자. 다만, 의사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 다.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등록포로
  -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보훈대상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보훈대상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li> <li>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li> <li>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ol>
-----	---

남원시 공고 제2022-798호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남 원 시 장

##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 1. 제정이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원 내용, 표창, 강사 위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독서문화 여건 조성(매년 1회 독서 관련 행사)과 관련한 규정(안 제4조)
- 나. 독서의 진흥을 위한 지원 내용 등 (안 제5조)
- 다. 표창, 강사 위촉 등 규정 (안 제7조~제8조)

**3. 입법예고기간** : 2022. 4. 1. ~ 4. 21. (20일간)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2년 4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2층, 문화예술과)

#####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seonhui0903@korea.kr), fax(063-620-6707) 및 직접방문 등

####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063-620-89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1부.

##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문화예술과장

### 1. 개정이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원 내용, 표창, 강사 위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독서문화 여건 조성(매년 1회 독서 관련 행사)과 관련한 규정(안 제4조)
- 나. 독서의 진흥을 위한 지원 내용 등 (안 제5조)
- 다. 표창, 강사 위촉 등 규정 (안 제7조~제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독서문화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3. . ~ 2022. 4.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붙임

#### 3) 규제예비심사: 비심사대상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함으로써,”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독서진흥)”을 “(독서문화 여건 조성)”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5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독서의 진흥을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경품, 상품권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연령별·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2. 독서교실 및 독서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학술행사, 강연, 독후감 대회, 독서문화행사, 도서관 주간 행사, 탐방 및 견학 등
4. 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책배달 서비스
5.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
6.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설문·조사·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

② 시장은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이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도서를 읽고 시 운영 공공도서관에 제출할 경우, 책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각종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료 이외로 발생하는 재료비 등의 비용은 필요한 경우 해당 참여자가 부담할 수 있다.

제7조(표창) 시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강사 위촉 등) ① 시장은 강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사회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중 “개최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2-799호

『남원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남 원 시 장

## 남원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 제정이유

남원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실정에 맞게 이용시간, 이용대상, 이용 제한 사항, 시설의 사용 등 조례를 현행화하고, 그 밖의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위치, 기능 규정(안 제1~4조)
- 나. 회원, 휴관일 및 이용시간, 이용 제한 사항 규정 (안 제5조~제7조)
- 다. 자료의 변상·기증·이관·폐기·대출에 대한 규정 (안 제8조~제12조)
- 라. 문화 활동 전개, 자원봉사자의 활용 규정 (안 제13조~제14조)
- 마. 시설의 사용, 장난감 대여실 이용 규정 (안 제15조~제16조)
- 바. 도서관 운영 위원회 및 개인정보 이용 규정 (안 제17조~제18조)

**3. 입법예고기간** : 2022. 4. 1. ~ 4. 21.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2년 4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2층, 문화예술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seonhui0903@korea.kr), fax(063-620-6707)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063-620-89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 남원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문화예술과장

## 1. 개정이유

남원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실정에 맞게 이용시간, 이용대상, 이용 제한 사항, 시설의 사용 등 조례를 현행화하고, 그 밖의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위치, 기능 규정(안 제1~4조)
- 나. 회원, 휴관일 및 이용시간, 이용 제한 사항 규정 (안 제5조~제7조)
- 다. 자료의 변상·기증·이관·폐기·대출에 대한 규정 (안 제8조~제12조)
- 라. 문화 활동 전개, 자원봉사자의 활용 규정 (안 제13조~제14조)
- 마. 시설의 사용, 장난감 대여실 이용 규정 (안 제15조~제16조)
- 바. 도서관 운영 위원회 및 개인정보 이용 규정 (안 제17조~제1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3. . ~ 2022. 4.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비 심사대상
  -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개선사항 반영)

남원시 조례 제 호

## 남원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원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시민의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지역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남원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을 준용한다.

1.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도서와 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시설물”이라 함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4. “수수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장난감 대여실”이란 장난감을 회원가입자에게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책이음 서비스”란 이용자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책이음 참여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7. “상호대차”라 함은 해당 도서관에 대출하려는 자료가 없을 경우,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도서관 간 이동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도서관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2. 자료의 제공·열람·대출
3.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
4. 어린이 및 청소년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및 교육
6. 지역의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 등 연계협력 구축사업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회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서대출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남원시에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회원

4. 남원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등록자

5.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다만, 공휴일 중 일요일은 개관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

3. 시장이 도서관 자료의 정리·점검, 시설물 수리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미리 공고 후 휴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1. 자료실: 화~토요일 09:00~22:00, 일요일 09:00~18:00

2. 장난감 대여실: 화~토요일 09:00~22:00, 일요일 09:00~18:00

휴실 12:00 ~13:00

제7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자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게임이나

음란사이트 등 일반 정서에 위배되는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변상책임) ①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거나 현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기증) ① 시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등록된 기증 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며, 등록에서 제외된 자료는 행사에 활용하거나 폐기 또는 다른 도서관, 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이관·폐기·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除籍)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除籍)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파손·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유실
  4. 도서를 대출받은 회원의 이주 및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전체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제12조(자료대출) ① 도서대출 회원증 소지자에 한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보존 또는 관리상 대출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3조(문화활동 전개) 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독서문화 창달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 활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식대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시설의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
2. 소음으로 인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 정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
4.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6조(장난감 대여실 이용) ① 장난감 대여실의 회원가입 대상자는 만 6세 이하(취학 전 아동)의 영·유아 자녀 및 손자녀를 둔 남원 시민으로서 남원시에 주소리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 한하며, 장난감 대여실 이용료 및 세부기준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은 조례 등에서 정한 이용자의 의무사항이나 이용상 주의사항들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8조(개인정보 이용)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에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반납기한이 지난 대출 자료의 회수를 위한 주소지 및 연락처 확인
2. 도서관 시설물 파손 등 행위자 확인
3. 도서관 회원가입을 위한 본인 및 가족 여부 확인
4. 이용자의 대출자료 이력 관리
5. 도서관의 적극적 서비스 제공 및 도서관 프로그램 홍보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립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 (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남원시립도서관	남원시 광한북로 54 (1층, 2층)
남원시어린이청소년도서관	남원시 역재3길 12





[별지 제3호서식] (제15조관련)

##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 사용 허가서

1. 사용자 인적사항

• 성명(단체명) :

성별 ( 남, 여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사용 신청일 :

2. 사 용 시 설 :

3. 목적 및 사유 :

4. 사용 인원 :

5. 사용허가기간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남원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제16조 관련)

## 장난감 대여실 이용 세부기준

## □ 장난감 대여실 이용대상 및 이용시간

이용 대상	이용 시간
시에 주소를 둔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가정	1. 자료실: 화~토요일 09:00~22:00, 일요일 09:00~18:00 2. 장난감 대여실: 화~토요일 09:00~22:00, 일요일 09:00~18:00(12:00~13:00 휴실)

## □ 장난감 대여실 이용

회원 구분	대여수량	대여기간
일반회원	매회 2점(대형 1점)	7일 (1회 7일 연장 가능)

## □ 회원의 연회비

구분	연회비	비고
일반회원	10,000원	

## ※ 연회비 면제 대상 (증빙자료 제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부모 또는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자녀를 둔 가정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 연회비 환불 기준

구분	환불 규정
가입 후 2개월 이내 (이사, 사망 등)	10% 공제 후 환불
가입 후 4개월 이내	30% 공제 후 환불
가입 후 4개월이 경과한 경우	환불 불가

## □ 장난감 이용 시 유의사항

1.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2. 대여 받은 장난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3.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4. 장난감 대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반납 지연 시 지연한 날짜만큼 대여를 할 수 없다.
5. 운영자는 조례 등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사항이나 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 □ 책임 및 변상 기준

1. 대여 중 회원이 대여물품의 일부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동일 품목으로 교체하거나, 단종 되어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대여 중 대여물품 전체를 분실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하게 파손한 경우: 회원은 대여물품 구입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대여자료	구입 시기	변상 금액
장난감	구입 6개월 미만	구매가격의 100% 변상
	구입 6개월 이상 ~ 1년 미만	구매가격의 80% 변상
	구입 1년 이상 ~ 2년 미만	구매가격의 60% 변상
	구입 2년 이상 ~ 3년 미만	구매가격의 40% 변상
	구입 3년 이상	구매가격의 10% 변상

3. 모든 파손과 분실에 대한 보상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

## 붙임 관련 법규

###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27조(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남원시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2-800호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남 원 시 장

##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 제정이유

휴관일 및 이용시간, 시설의 사용 등 남원시립도서관 실정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하고, 그 밖의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위치, 기능 규정(안 제1~4조)
- 나. 도서관 휴관일 및 이용시간, 화원 이용 제한 사항 규정 (안 제5조~제8조)
- 다. 도서관 자료의 이관·폐기, 자료의 기증에 대한 규정 (안 제9조~제11조)
- 라. 변상 책임, 문화 활동 전개, 자원봉사자의 활용 규정 (안 제12조~제14조)
- 마. 시설의 사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 규정 (안 제15조~제16조)
- 바. 도서관 운영 위원회에 관련한 규정 (안 제17조~제21조)

**3. 입법예고기간** : 2022. 4. 1. ~ 4. 21.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2년 4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2층, 문화예술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seonhui0903@korea.kr), fax(063-620-6707)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063-620-89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문화예술과장

## 1. 개정이유

휴관일 및 이용시간, 시설의 사용 등 남원시립도서관 실정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하고, 그 밖의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위치, 기능 규정(안 제1~4조)
- 나. 도서관 휴관일 및 이용시간, 회원 이용 제한사항 규정 (안 제5조~제8조)
- 다. 도서관 자료의 이관·폐기, 자료의 기증에 대한 규정 (안 제9조~제11조)
- 라. 변상 책임, 문화 활동 전개, 자원봉사자의 활용 규정 (안 제12조~제14조)
- 마. 시설의 사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 규정 (안 제15조~제16조)
- 바. 도서관 운영 위원회에 관련한 규정 (안 제17조~제2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3. . ~ 2022. 4.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비 심사대상
  -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개선사항 반영)

남원시 조례 제 호

##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시민의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지역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남원시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시설물”이라 함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3. “수수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책이음 서비스”란 이용자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책이음 참여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상호대차”라 함은 해당 도서관에 대출하려는 자료가 없을 경우,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도서관 간 이동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을 준용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

제4조(기능) 도서관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2. 자료의 제공·열람·대출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전시회·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7.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또는 작은도서관 등의 설립 및 육성
8. 지역의 향토 자료 수집·관리
9.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다만, 공휴일 중 일요일은 개관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
3. 시장이 도서관 자료의 정리·점검, 시설물 수리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미리 공고 후 휴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화요일~토요일 09:00~22:00, 일요일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서대출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남원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회원
4. 남원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등록자
5.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자료대출) ① 도서대출 회원증 소지자에 한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 할 수 있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보존 또는 관리상 대출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자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게임이나 음란사이트 등 일반 정서에 위배되는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이관·폐기·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除籍)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除籍)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파손·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유실
4. 도서를 대출받은 회원의 이주 및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기증) ① 시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등록된 기증 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등록에서 제외된 자료는 행사에 활용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다른 도서관, 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책임) ①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문화활동 전개) ① 시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 문화 발전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 활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식대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

식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시설의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
2. 소음으로 인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 정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
4.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6조(개인정보 이용)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에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반납기한이 지난 대출 자료의 회수를 위한 주소지 및 연락처 확인
2. 도서관 시설물 파손 등 행위자 확인
3. 도서관 회원가입을 위한 본인 및 가족 여부 확인
4. 이용자의 대출자료 이력 관리
5. 도서관의 적극적 서비스 제공 및 도서관 프로그램 홍보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교육계·도서관계·시민단체 등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8조(위원회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2. 독서문화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도서관 운영의 개선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
5. 그 밖의 독서운동계획 수립 등 도서관 후원

제2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남원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립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 (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남원시립도서관	남원시 광한북로 54 (1층, 2층)
남원시어린이청소년도서관	남원시 역재3길 12





### 남원시립도서관 시설 사용 허가서

1. 사용자 인적사항

• 성명(단체명) :

성별	( 남, 여 )
----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사용 신청일 :

2. 사 용 시 설 :

3. 목적 및 사유 :

4. 사용 인원 :

5. 사용허가기간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 붙임 관련 법규

###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27조(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